

춘천지방법원 2021. 4. 27 선고 2020가단5236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

피고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빌

담당변호사 박형일

변론 종결 2021. 4. 13.

판결 선고 2021. 4. 27.

주 문

1. 피고와 B 사이에 춘천시 C 임야 759㎡ 중 B의 1/2 지분에 관하여 2019. 11. 6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B에게 위 임야 중 B의 1/2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19. 11. 6. 접수 제4325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의 신용보증과 대위변제

1) 원고는 D과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(이하 '이 사건 신용보증약정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, D은 원고의 보증 하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대출을 받았다.

①	2018. 2. 2.	25,500,000	30,000,000	E은행
②	2018. 3. 2.	11,500,000	14,000,000	중소기업은행

2)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
3) D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해 2019. 10. 29.에, E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해 2019. 11. 3. 각 원금(분할상환금 포함)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.

4) 원고는 2019. 12. 24. 중소기업은행에 12,056,734원, 2020. 1. 2. E은행에 21,491,045원 등 합계 33,547,779원을 대위변제하였고,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을 위해 2,181,125원을 지출하였다.

나. B의 피고에 대한 담보제공

피고는 2019. 11. 6. B와 춘천시 C 임야 759㎡ 중 B의 1/2 지분(이하 '이 사건 임야'라 한다)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,400만 원, 채무자 B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'이라고 한다)을 체결하고,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'라고 한다)를 마쳤고, 같은 날 이 사건 임야 외 F 임야 266㎡, G 임야 818㎡, H 전 15,359㎡ 등 3필지의 토지 중 B의 각 지분에 관해서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부터 6의 각 기재(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

- 1)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, D과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35,728,904원[= 33,547,779원(대위변제금) + 2,181,125원(채권보전비용)] 및 그 중 12,056,73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. 12. 24.부터, 21,491,04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. 1. 2.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(이하 '이 사건 구상금채권'이라 한다).
- 2) 원고의 D과 B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비록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, 당시 이미 원고와 D, B 사이에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다. 또한,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 바로 전인 2019. 10. 29. 중소기업은행의 대출금에 대해, 2019. 11. 3. E은행의 대출금에 대해 원금(분할상환금 포함)연체 등으로 인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, 실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무렵에는 이미 B의 재정 상태가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.
- 3)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후 2개월 남짓 지나 원고가 중소기업은행과 E은행의 각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. 그리고 실제로 원고는 위 각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B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, 위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(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).

나. B의 무자력 여부

- 1) 적극재산 갑 6부터 9의 각 기재와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아래 표 순번 1부터 4까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, 위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는 403,975,9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1	춘천시 C 토지 중 1/2	26,944,500
2	춘천시 F 토지 중 133/266	3,990,000
3	춘천시 G 토지 중 409/818	12,270,000
4	춘천시 H 토지 중 1/2	222,705,500
5	춘천 I 토지 및 건물	138,065,980
	403,975,980	

2) 소극재산 갑 1부터 5,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, B의 소극자산은 아래 표와 같이 639,922,93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1	J조합	74,403,158
2	K	9,945,145
3	L조합	330,000,000
4	강원신용보증재단	18,881,841
5	J조합	8,117,885
6	원고	35,728,904
7	피고	162,846,000
합계	639,922,933	

3) 따라서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소극재산이 235,946,953원(= 소극재산 639,922,933원 - 적극재산 403,975,980원)을 초과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.

다. 사해행위의 성립

1)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(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).

2)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
3)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중소기업은행의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후 8일, E은행의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후 3일 지나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점에 비추어 보면,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라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1) 주장의 요지 피고는 B가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지 못한 채 B에게 돈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

이 사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.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.

2)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(대법원 2006. 7. 4.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).

피고가 제출한 을 1부터 8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.

마. 원상회복

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.

판사김도현